

각자의 빛 함께 그리는 미래

2026학년도 공립유치원 · 초등교사(특수, 보건, 사서, 영양, 상담)

시 · 도간 인사교류(교환) 추진 계획

2025. 9.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목 차 |||||

I. 근거	1
II. 목적	1
III. 방침	1
IV. 교류 원칙 및 시행 사항	2
V. 시·도간 전출	3
VI. 시·도간 전입	8
VII. 시·도간 교환(파견)	9
VIII. 행정 사항	12
IX. 향후 추진 일정	17
 [서식 1~7] 2026학년도 시도간 교류(교환) 제출 서식	18
 [참고] 2026학년도 시도간 교류(교환) 관련 Q&A	26

시·도간 인사교류(전출, 교환) 추진 계획

 경상남도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I 근거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3조의3(인사교류)
- ☞ ‘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 이양(2008.8.27.)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14530(2025. 9. 12., “[안내, 제출] 2026.3.1.자 시도간 교류 인사교류 담당자 협의회 결과 및 추진 계획 제출”)

II 목적

- ☞ 교원의 타 시·도간 인사 교류를 통하여 별거 가족 합류 및 전출 희망자의 고충 해소
- ☞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여 교육활동 활성화에 기여

III 방침

- ☞ **(대상)**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 포함) 교사로 2026.3.1.자 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 교환(파견)을 희망하는 교사
- ☞ **(방법)** 2026.3.1.자 전출, 교환(파견) 희망자 중 시·도교육청 간 교류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교류(학교급별, 직급별)를 원칙으로 함**
- ☞ **(시행)** 2026학년도 추진 계획에 의거 타 시·도 전출, 교환(파견) 희망을 받아 2026.3.1.자로 시행

IV 교류 원칙 및 시행 사항

1 교류(전출, 교환) 원칙

- ☞ **동수교류**: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해당 교사의 직위, 직급(동일자격증 소지자 간)간 **1:1 동수로 교류**
 - ☞ **일방교류**: 교사 수급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 간 합의에 의하여 일방 전출입을 실시 할 수 있음
- ※ 타 시도 전출, 교환(파견) 신청은 여러 시·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2 2026년 시행 사항

- ☞ 타 시도 전출, 교환(파견) 신청은 여러 시도 중복 신청 불가
- ☞ 일방전출, 전출, 교환(파견)은 중복(동시) 신청 불가
- ☞ 교환(파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교환(파견)연장은 신청 불가**
 - ※ 2024.3.1.자 발령자의 경우 교환(파견) 연장신청 불가
- ☞ 전출, 교환(파견) 확정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며, 특정 사유로 인한 취소 시 향후 2년간 전출, 교환(파견) 신청 불가
 - ※ 특히, 시·도간 교류는 동수교류가 원칙이므로 **전출, 교환(파견) 확정 후 특정 지역으로의 배치가 어렵다는 판단 등에 따른 단순 포기는 불가**
- ☞ 교환(파견) 신청자의 경우 조기 복귀 원칙적 불가
- ☞ 2024.3.1.자 교환(파견) 전입자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 1정 자격연수를 실시하지 않음
- ☞ **전남교육청은** 교환(파견) 시 순위 결정은 지리적 특성(도서벽지 포함)으로 인해 시·도로 하지 않고 교환(파견) 희망 지역(시군)으로 실시함
(예) 경기도에서 목포를 희망하고, 목포에 있는 교사가 경기도를 희망해야 교환(파견) 가능함
- ☞ **전북교육청은** 전입(교류) 확정 후 시·군 배치 시, 개인 일신상의 사유(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 거주지, 건강, 부양가족 등)는 고려사항이 아님
 - 전라북도 사군의 정원 수급 상황에 따라 임지가 결정되므로 희망 사군 배치를 보장할 수 없음
 - ※ 그 외 교육청은 「2026.3.1. 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 제출
- ☞ **[2026.3.1.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계획 탑재처]**
 - (10.2.~10.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판으로 안내 예정
 - (10.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자료실> 초등교육과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계획」 안내 예정
 - [바로가기] [부서별자료실](#) > [초등교육과](#) > [시도간교원인사교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V 시 · 도 간 전 출

① 전 출 순 위 및 서 열 기 준

순 위	구 분	대 상 및 기 준	순 위 별 결 정 기 준
우 선 순 위	공공기관 이전 배우자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우자 (p.4 참고)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1 순 위	장애인 관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국가(독립)유공자 관련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2 순 위	장애인 관련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부양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3년 이상 별거부부	» 현재 별거 중인 자로 별거부부 3년 이상인 자 • 전출 희망 시도 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자녀 3명 이상 부양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노부모 봉양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70세 이상(2026.2.28.자 기준)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3 순 위	3년 미만 별거부부	» 현재 별거 중인 자로서 별거부부 3년 미만자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생활연고자 근무희망자	» 근무희망(생활 연고자 포함)	

② 서열 명부 작성

- ➡ 전출 순위 및 서열 기준에 의거 전출 희망자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되, **희망 시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초등), 사서교사(초등), 영양(초등)교사, 상담(초등)교사로 구분 작성
- 특수(초등)교사는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초등)-재활복지로 구분
-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사를 통합하여 최종 명부를 작성하며, 통합하여 명부 작성 시 서열 기준이 다른 것은 인사관리기준상 일치했던 시점의 기준을 적용

- ➡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 자격 구분이 없으므로 교류를 희망한 시·도교육청 전입 시 초등, 중등, 특수학교 구분 없이 배치될 수 있음

- ➡ 공공기관 이전 배우자

【관련】

1. ‘공공기관 이전 직원의 배우자(교원)는 서열기준상 우선 전출(교환)대상자로 처리’
(국토교통부 요청, 교육부 교원정책과-5886(2013.10.23.))
2. ‘2023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교원) 근무지 이전 지원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1671(2023.9.21.))

-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부부 별거가 증명되어야 함(공공기관 타지역 이전으로 인하여 부부 별거가 된 경우 해당)

※ 단,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결혼하여 부부 별거, 입사한 경우 제외

③ 전출 제한

- ➡ 교(원)장, 교(원)감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 수석교사
※ 일방 전입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 ⑤ 2026.2.28.자 기준 휴직 중인 자, 시·도간 인사교류와 동시에 휴직 예정자 및 퇴직 예정자
 - ※ 단, 2065.3.1.자 복직 예정자 및 2026.2.28.자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만료자는 전출 희망 가능
- ⑤ 본도 근속경력 1년 미만인 자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는 3년 미만인 자)
- ⑤ 타 시·도의 전입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교사
- ⑤ 장기 교환(파견) 근무 중인 교사 또는 계속 교환(파견) 근무자
- ⑤ 교육청 지원으로 유학 휴직, 국내외 연수기관 교환 등을 마치고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교원특별연수(학습연구년), 한국교원대 특별전형(파견), 영어심화연수 등), 초빙 기간에 있는 초빙교사
 - * 의무복무기간 : 학습연구년(2년), 한국교원대 특별전형(2년), 영어심화연수(2년)
- ⑤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순위 인정 관련 사항

○ 본도 근속경력

- ⑤ 본도에 교사로 임용되어 전임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
 - ※ 기간제교사 경력 제외
- ⑤ 타 시·도 전입자는 전입 후 도내에서 전임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
- ⑤ 모든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정직 기간, 군복무 기간, 국내외 교환(파견) 기간 등은 본도 근속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전후를 합산하여 처리함
 - ※ 단,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육아휴직) 및 제7호의 2(입양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 교육총경력

- ⑤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경력
 - ※ 국내외 연수기관 교환 근무 기간은 인정
 - ※ (유치원) 사립유치원 경력은 인정,
어린이집 교사(강사) 및 유치원(전임, 방과후) 강사 경력은 미인정
- 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
- ⑤ 임용 후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임용 전 군복무 기간은 제외)
- ⑤ 육아휴직, 입양휴직 기간 전체
- ⑤ 기간제교사 경력(단, '89.1.9. 이후 학교장 발령 기간제교사 경력 인정)
- ⑤ 기타 휴직 기간, 직위해제, 정직 기간 등은 제외하고 전후를 합산하여 계산

○ 노부모 봉양

1년 이상 부부별거 중인 자 중 2026.2.28.자 기준으로 만70세 이상의 노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 조부모는 부모 사망 시 해당)를 전출 희망 시도에서 부부 중 1명이 실제 봉양(주민등록상 같이 등재)하는 자

○ 별거부부 인정 범위

- 아래의 요건을 기준으로 전출 희망 지역이 인접권 혹은 인접권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정 범위가 상이함

- ⑤ 시·도간 인사교류 기준일(2026.2.28.)을 기점으로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기간
- ⑤ 배우자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있는 자로 전출 희망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
 - ※ 별거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간주
 - ※ 2014년 시도간 인사교류 계획(초등교육과-1992(2013.10.2.)호)에서부터 공문발송일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옮긴 경우는 별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⑤ 현재 별거 중인 자로서 별거기간이 단절된 경우 이전 별거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교환(파견)근무, 휴직기간, 출산휴가로 인한 별거기간 단절은 제외
 - ※ 전출, 교환(파견) 희망자 중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경력,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부부 별거기간 산정은 이전 교환(파견) 근무 기간, 휴직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2003학년도 및 이전 타 시도 교환(파견) 근무자의 교환(파견)근무 기간은 당시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 별거 및 본도 근속경력에 산입

[전출희망 인접권 지역: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 ☞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주민등록상 반드시 등재되어 있고, 전출 희망자는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와의 별거 없이 배우자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있는 요건만으로는 별거부부 인정 불가

※ 배우자 및 전출 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기간 인정 불가

☞ 인접권 지역 시도 별거기간의 인정 범위(예)

- 부부가 모두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부부별거 상태인 경우(부부 중 한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접권 전출 희망지역에 등재된 경우) 타시도 부부별거 사유로 미인정
- 배우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전출 희망자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전출 희망자가 배우자 직장 소재지인 부산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양산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경우처럼 실제 별거없이 동거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별거인 경우 별거기간으로 미인정

[전출희망 인접권 외의 지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 ☞ 배우자의 직장, 사업장이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기간 인정

※ 주소지 혹은 사업장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전출 희망 시도 내 등재 시 별거 인정

☞ 인접권 외 지역 시도 별거기간의 인정 범위(예)

- 경기도 전출 희망자의 경우 배우자 및 해당자 주소지 및 사업장이 경기→서울→경기로 변경되었다면, 최근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만 별거기간으로 인정(주소지와 사업장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전출 희망 시도에 있어야만 별거기간으로 인정)

VI 시·도간 전입

① 전입 기준

- ➡ 전입자의 전입 기준은 타 시·도의 전출 순위에 의함
- ➡ 전입 방법은 동수교류, 일방전입에 의함
- ➡ 전입자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및 인사관리기준에 적용받음

② 전입 제한

- ➡ 교(원)장, 교(원)감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 수석교사
- ➡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 ➡ 2026.2.28.자 기준 휴직 중인 자, 인사교류와 동시에 휴직 예정자 및 퇴직 예정자
 - ※ 단, 2026. 3. 1.자 복직 예정자는 희망 가능
- ➡ 지병이 있거나 심신 허약 및 현실 부적응 교사
 - ※ 위 사실이 전입 후 드러날 경우 원소속 시도로 강제 전출할 수 있음
- ➡ 특정 지역으로의 조건부 전입 요청 시에는 '부동의' 처리
- ➡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VII 시·도간 교환[파견]

① 교환(파견) 순위 및 서열 기준

순위	대상 및 기준	순위별 결정 기준
우선순위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우자 (p.4 참고)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경력 3. 교육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2순위 부부 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1순위	» 특별연구과제 부여자(교육감이 부여) » 전출 1순위 해당자와 동일	
2순위	» 전출 2순위 해당자와 동일	
3순위	» 전출 3순위 해당자와 동일	

② 교환(파견) 세부 사항

구분	내용
근무 대상	» 본도 근속경력 1년 이상의 유.초등, 특수교사 - 단,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는 본도 근속경력 3년 이상인 자 - 타 시도 교환(파견)근무 복귀자는 복귀 후 본도 근속경력 1년 이상인 자
근무 요건	» 교환(파견) 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급 등 상호교환 조건이 합치되는 안의 범위에서 1: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함 » 교환(파견) 근무희망 시도의 전입 배제조건에 들지 않는 자 » 교환(파견) 근무 중 장기적인 휴직(육아휴직 포함), 휴가 혹은 퇴직(명예퇴직) 예정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학교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 후 교환(파견) 신청할 것 » 타 시도 교환(파견) 확정자일 경우 타 시군 전보 내신보다 우선함 (단, 지역만기자의 경우는 제외)
근무 기간	» 교환(파견) 근무 기간은 2년임 (연장신청 불가)
복귀 후 임지	» 교환 근무 당시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 형편에 따라 동일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할 수 있음

③ 교환(파견) 전출 제한

- ➡ 타 시도 교환(파견) 복귀 후 본도 근속경력 1년 미만인 자
- ➡ 징계처분 집행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 ➡ 2026.2.28.자 기준 휴직 중인 자, 교환(파견)과 동시에 휴직 예정자 및 퇴직 예정자
※ 단, 2026. 3. 1.자 복직 예정자는 희망 가능
- ➡ 타 시도의 전입 배제조건에 해당하는 교사
- ➡ 교육청 지원으로 유학 휴직, 국내외 연수기관 교환 등을 마치고 복귀 후 의무 복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교원특별연수(학습연구년), 한국교원대 특별전형(파견), 영어심화연수 등), 초빙 기간에 있는 초빙교사
* 의무복무기간 : 학습연구년(2년), 한국교원대 특별전형(2년), 영어심화연수(2년)
- ➡ 기타 교환(파견)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교환(파견) 전입 제한

- ➡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 ➡ 2026.2.28.자 기준 휴직 중인 자, 교환(파견)과 동시에 휴직 예정자 및 퇴직 예정자
※ 단, 2026. 3. 1.자 복직 예정자는 전입 가능
- ➡ 지병이 있거나 심신 허약 및 현실 부적응 교사
※ 위 사실이 전입 후 드러날 경우 원소속 시도로 강제 전출할 수 있음

- ➡ 특정 지역으로의 조건부 전입 요청 시에는 '부동의' 처리
- ➡ 기타 교환(파견)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유의 사항

- ➡ 시·도간 교환(파견) 근무는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추천함
 - ※ 부적합자는 추천 배제하며, 해당 시도에서 교환(파견) 근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천 제한됨
- ➡ 복귀 후 임지 지정은 교환(파견) 당시의 근무기관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귀자의 희망 혹은 인사 형편에 따라 동일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할 수 있음
- ➡ 시도교육청 간 교환(파견) 근무 대상, 근무 요건, 선정 기준, 근무 기간, 복귀 후 임지 지정, 근무 승인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
- ➡ 교환(파견) 근무 승인은 시도교육감 간 협의하여 승인
- ➡ 별거기간 인정은 시도간 전출 기준의 별거 기준 준용
- ➡ 교환(파견) 인사교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
- ➡ 교환(파견) 교류자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및 인사관리기준에 적용받음

VIII 행정 사항

1 관련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목록	[붙임3] 의 (서식1): (전출, 교환) 희망자 신청서 2부	엑셀 시트명: detail
	[붙임3] 의 (서식2): (전출, 교환) 희망자 명부 1부	엑셀 시트명: dataa
	[붙임3] 의 (서식3): (전출, 교환) 인적 사항 1부	엑셀 시트명: 인적사항
	[붙임2] 의 (서식4): (전출, 교환) 서약서 1부	※ 학교(유치원)장 확인, 경유 후 본인 날인
	[붙임2] 의 (서식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인사기록카드 NEIS출력물] - 인사기록카드(전체) 2쪽 모아찍기(양면) 출력, 해당 부분 노란색 형광펜 표시 - 학교(유치원)에서 3부(인사담당자: 교(원)감) 출력 후 다음과 같이 원본대조하여 제출 ※ 학교(유치원): 본인, 교(원)감, 교(원)장 도장 날인, 학교(유치원) 원본대조필(간인생략) → 교육지원청 제출 ※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 과장 날인, 교육지원청 원본대조필(간인생략) → 도교육청 제출	□ 원본대조필 확인 □ 간인(생략) ※ 1부 : 교육지원청 보관 ※ 2부 : 도교육청 제출 (제출방법 p15~16 참고)
선택 목록	[각종 개인 증빙서류] - 해당 사항 부분 노란색 형광펜 표시 - p.13 증빙서류 일람표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증빙서류 제출 요망	
	[붙임2] 의 (서식6-1):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교육지원청용) [붙임2] 의 (서식6-2):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학교/유치원용)	서식6-1, 6-2
	[붙임2] 의 (서식7): 노부모 봉양 확인서	서식7
유의 사항	● 제출 시 전출, 교환(파견) 제한자는 추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 ● 학교에서는 타 시도 교환(파견)자 및 현재 휴직자, 직속기관 파견교사에게도 별도 안내 필요 ● 제출 서류는 (서식1)~(서식7), 인사기록카드, 각종 개인 증빙서류 순으로 묶어서 제출 ※교사 구분(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상담) 순으로 제출	

2 **증빙서류 일람표 및 유의사항**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타 시도 교류(전출, 교환(파견)) 희망자 증빙서류 일람표		
순위	대상자	제출 서류 (*부수 확인)
우선 순위	공공기관 이전 배우자	① 배우자 재직증명서 1부(공공기관 이전지 근무 기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별거부부 확인용)
1 순위	장애인 관련	①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1부
	국가(독립)유공자 관련	①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명서 1부 - 보훈처(지청) 발행, 본인, 배우자, 존.비속 관계 명시 ※ 내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증명서 ③ 전출희망지에 거주하는 관계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접 시.도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①, ②의 증명서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건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순위	장애인 관련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장애인과 관계 확인용) ②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전출 희망지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양하는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1부
	3년 이상 별거부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②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 전출 희망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인접 시도가 아닌 경우는 배우자 재직증명서도 가능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전출 희망지역이 인접권일 경우는 아래 항목의 서류 제출 -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사본) 1부 - 그 외 실제 별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서)
	자녀 3명 이상 부양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②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전출 희망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인접 시도가 아닌 경우는 배우자 재직증명서도 가능
	노부모 봉양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노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②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전출 희망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인접 시도가 아닌 경우는 배우자 재직증명서도 가능 ④ (서식7) 노부모 봉양 확인서 1부 ※ 노부모 봉양은 부부별거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미혼은 적용안됨 ※ 조부모 봉양은 부모 모두 사망시에만 해당
3 순위	3년 미만 별거부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②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 전출 희망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인접 시도가 아닌 경우는 배우자 재직증명서도 가능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전출 희망지역이 인접권일 경우는 아래 항목의 서류 제출 - (서식6)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사본) 1부 - 그 외 실제 별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서)
	생활연고자 근무희망자	공통 제출 서류만 제출, 증빙서류 없음

- ①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원본**이어야 함(서류 제출일 기준)
- ② **전별(전출, 교환(파견)) 증빙서류는 개인별로 1묶음, 각 장 하단에 연필로 쪽수 표시**
- ③ 노부모 봉양 확인서 (서식7)는 작성 후 학교(유치원)장 확인 제출 (학교장 및 본인 날인)
- ④ **전출 희망지역이 인접권(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일 경우 실제 별거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관련】 초등교육과-9865 (2014.7.1.)
[2014.7.1.이전] 주민등록상 별거만으로도 별거기간 인정
[2014.7.1.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그 외 실제 별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내역서) 등
(예) 양산지역 초등학교 근무자가 부산으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전출 희망자가 경남 양산에서 해당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내역서 등 제출
- 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근무 기관의 주소지 및 근무 기간 반드시 명기 (희망자 소속교 교(원)감 확인 전화 후 확인 사항을 기록하여 날인)
-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출 희망 교사와의 관계 확인용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첨부(기본증명서 등)
- ⑦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 기록된 초본(별거기간 확인) 제출
- ⑧ 혼인관계증명서는 별거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날짜와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서류임
- ⑨ 본도 근속경력 및 교육총경력 산정 시 산출 대상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 반드시 확인
- ⑩ 전출, 교환(파견) 희망자의 희망지역이 인접권인지, 인접권 외의 지역인지에 따른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③ 제출 방법

📍 유치원, 초등학교 → 교육지원청

순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제출처
		공문첨부	출력물 (인편,우편)		
1	(서식1) (전출, 교환) 희망자 신청서 2부	○ excel	○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 교육 지원청별 계획 및 안내 일정에 따름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 청원 감해는 초등교육과 제출 ※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2	(서식2) (전출, 교환) 희망자 명부 1부	○ excel	○		
3	(서식3) (전출, 교환) 인적 사항 1부	○ excel	○		
4	(서식4) (전출, 교환) 서약서 1부		○		
5	(서식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6	(서식6-2)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유치원,학교용) 1부 ※ 전출, 교환(파견) 희망지역이 인접권일 경우만 제출		○		
7	(서식7) 노부모 봉양 확인서 1부		○		
8	인사기록카드 NEIS출력물 3부		○		
9	각종 개인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시 유의사항					
● 전출 희망지역이 인접권일 경우 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제 별거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청 시 협조) ● 1. (서식1) (전출,교환) 희망자 신청서 2부 - 학교(유치원)용 1부, 교육지원청용 1부(출력방향 교육청용 변경 ,작성자 본인 날인 확인) 단면 인쇄 ● 3. (서식3) 인적사항 1부 - 교육지원청 직인 날인 ● 8. 인사기록카드 NEIS 출력물 3부 - (1부) 본인, 교(원)감, 교(원)장 도장 날인 및 학교(유치원) 원본대조필(간인생략) - (2부) 출력물만 제출(도장 날인 및 원본대조필 불요)					

📍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순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제출처
		공문첨부	출력물 (인편,우편)		
1	(서식1) (전출, 교환) 희망자 신청서 1부	○ excel	○	2025. 10.23.(목)	[유치원, 특수 학교(유치원)] 유아특수교육과로 공문 제출 [초등, 특수학교 (초등)] 초 등 교 육 과 로 공문 제출 ※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2	(서식2) (전출, 교환) 희망자 명부 1부	○ excel	○		
3	(서식3) (전출, 교환) 인적 사항 1부	○ excel	○		
4	(서식4) (전출, 교환) 서약서 1부		○		
5	(서식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6	(서식6-1)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 1부 (교육지원청용)		○		
	(서식6-2)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특수학교) 1부				
7	(서식7) 노부모 봉양 확인서 1부		○		
8	인사기록카드 NEIS출력물 2부		○		
9	각종 개인 증빙서류 각 1부		○		
10	[붙임4] 인사교류 희망자 명부 (교육지원청 취합용)	○ excel			
제출 시 유의사항					

IX 향후 추진 일정

연번	업무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고
1	시·도별 교류 희망자 현황 공개 및 공유	2025.11.10.(월)	도교육청 누리집
2	시·도별 교류 대상자 확정	2025.12.8.(월) ~ 12.12.(금)	
3	시·도별 교류 전출입자 확정	2025.12.30.(화)	
4	시·도별 교류자 인사발령 및 NEIS처리	2026. 2월 말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전출, 교환) 희망자 신청서 [참고용, 붙임3 엑셀파일 작성]

(서식1) 2026.08.01. 타시도 **전출** 희망자 신청서

전출 희망시도	회사구분 (전출과목)	소속	성별 (남/여)	생년월일 나이스개 입력	소재지(구) (1회입)	전출희망지 (구입)	별거기간 (3회입)	부부합산 소득세액 (소득세구분)	전출 기준	노무비 부담	특가(공인) 보증 (합계전부담)	소속인종별 (신규,포인)	비고
서울	호봉	가계호봉확보	이하늘	720717	초1정	서울	.	0.00	2급위	노부부부부	노부부부부	비동시합원	-----
	호봉	여	91000000	중구	남구	서구	0.00	노부부부부	노부부부부	비동시합원	---	-----	

별거기간 산출 대상 기간 구하기(제외한에 0표)

해당에

① () 신규입용 전 결혼한 경우

② () 경남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신규입용 후 결혼한 경우

③ () 타 시,도교육청 관내학교 신규입용 후 결혼한 경우

2026

2

28

④

경남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신규입용(전입)일(① ③)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일(②)

⑥의 경우도 바로 여기에 입력

⑥

별거기간 산출 대상 기간 (④-⑤-(⑥ 또는 ⑤))

0

0

0

별거기간 산출 대상 기간(⑥)에서 제외되는 기간 합계(⑦) 구하기

별거기간에서 제외사유

부터

까지

기간

년

월

일

⑧

⑨

⑩

⑪

⑫

⑬

별거기간 산출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합계

0

0

0

실제 별거기간 (⑧) 구하기

⑭

실제 별거기간 (⑧-⑬-⑮)

0

0

0

첨부한 제출서류 목록 (첨부 자도 없에 0표)

제출서류 (해당함에 0표)

()

호봉발령사할 1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별거기간 입증 증명자료 1부

()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기타 증명자료 1부

본도 근속 교육 경력 구하기

①

본도 근속교육경력 산출 기준일

2026

2

28

②

경남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신규입용(전입)일

본도 근속교육경력 산출 대상 기간

근무구

부터

까지

기간

년

월

일

1

2

3

4

⑤

본도 근속교육경력 산출 대상 기간 합계(③-④-⑤)

0

0

0

본도 근속교육경력 산출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속교육경력에서 제외사유

부터

까지

기간

년

월

일

1

2

3

4

⑧

본도 근속교육경력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합계

0

0

0

서식 2

2026.3.1. 타시도 (전출, 교환) 희망자 명부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

[illegible]

서식 3 [전출, 교환] 인적사항 [참고용, 붙임3 엑셀 파일 작성]

2026.3.1.자 (전출, 교환) 인적 사항

(전출, 교환) 희망 시도 ()

경상남도○○교육지원청

인 적 사 항	소속	○○시(군) ○○초등학교			생년월일	00.00.00
	성명		직위		교육총경력	00.00
	현주소					
	전출 희망지 (생활연고)	1희망(), 2희망(), 3희망()				
	연락처	자택	휴대폰	성별		
전출사유						

※ 작성요령

1. 전출 희망 시도 명칭을 정확하게 작성(예: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2. 전출 희망지는 (서식1) 입력 시 자동으로 작성
 - 각 시도에서 추후 학교 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됨
3. 소속명: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식 4 [전출, 교환] 서약서

(전출, 교환) 서약서

본인은 2026.3.1.자 타 시도 (전출, 교환)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령 후에라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교환 근무자인 경우 교환기간 동안 교환기관의 복무형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전출, 교환) 근무 해당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형편상 희망 지역이 아닌 다른 시, 군, 구로 발령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단순 변심에 따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학교장 경유	
직인	사인 (학교장 도장)

2025년 10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 . 이용 목적: 시도간 교사 인사교류 업무 처리
2. 개인정보수집 항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나이스개인번호, 소지자격, 주소, 별거기간, 가족관련 정보, 최근 2년간 근무상황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 인사교류 관련 각종 증빙자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10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도간 교사 인사교류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 동의

2025년

10월

☐ 동의 안함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교육청 귀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경상남도교육청 및 16개 시도교육청, 소속교육지원청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시·도간 교사 인사교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나이스개인번호, 소지자격, 최근 2년간 근무상황부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10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시도간 교사 인사교류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 동의

2025년

10월

☐ 동의 안함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교육청 귀하

사식 6-1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 [교육지원청용]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

소 속	00학교/00유치원	직위	교사(초등)/교사(유치원)
성명		생년월일	0000.00.00.
인사교류내용	(전출, 교환)	희망지	00시(도)
거주지 주소			

위 교사는 ○○시(도)로 (전출, 교환)을 희망하여 관련자 모니터링, 각종 증빙서류 검토 등 별거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별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

확인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사식 6-2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 [학교,유치원용]

실제 별거사실 확인서

소 속	00학교/00유치원	직위	교사(초등)/교사(유치원)
성명(인)	(인)	생년월일	0000.00.00.
인사교류내용	(전출, 교환)	희망지	00시(도)
거주지 주소			
실제 별거 확인 내용	실제 별거 기간	실제 별거 년수	
	0000.00.00.~0000.00.00.(1년) 0000.00.00.~0000.00.00.(1년)	00.00	
배우자 성명		근무처	
거주지 주소			
확인방법(예)	확인내용(예)		확인일시
제출서류 검토	- 교사 000가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니 매달 일정액의 생필품 구입 내역, 자녀 병원 진료비 등이 있음		2025.10. .
제출서류 검토 및 주거지 방문	- 교사 000가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00시 000소재 주거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고 부부가 별거하고 있음을 확인함		2025.10. .
동료교사 면담	- 동료교사 000와의 면담을 통해 교사 000는 00에서 출퇴근을 하며 배우자는 000에서 거주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확인함		2025.10. .
제출서류 검토 및 해당교사 면담	- 교사 000가 시택인 00에서 현임교에 출퇴근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에는 통행료, 주유 등에 대한 내역이 없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결과 출퇴근 사실이 확인됨		2025.10. .

위와 같은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교사 000의 실제 별거사실에 이상이 없으며,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5. 10. .

학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인사위원회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위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작성자 직 교(원)감 성명 (인), 확인자 직 교(원)장 성명 (인)

경상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노부모 봉양 확인서

노부모 봉양 확인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봉양 기간
					20 . . 부터 현재까지 ※ 1년 이상일 경우 인정함

2. 부모 인적 사항

성명		본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19 . . .	연령	만()세
주소			

위와 같이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10 . .

작성자: ()학교/유치원 교사 (인)

확인자: ()학교/유치원 교(원)장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Q1. 시도간 교류의 1순위에 해당하는 국가(독립)유공자의 범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 1순위에 해당하는 국가(독립)유공자 관련 범위를「법률 해당자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 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 1대의 직계 존, 비속(부모,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 모는 해당없음)
-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 직계 비속: 자,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Q2. 저는 부산, 아내는 경남에서 10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3명을 낳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최근 육아휴직 기간은 별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별거는 했고, 3자녀면 2순위가 되나요?

- 지금까지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전체 별거기간이 총 1년 이상이고, 자녀를 3명 이상 두었다면 2순위에 해당합니다.

Q3. 경남에 90년 3월 1일자 발령받아 95년도에 결혼하여 2000년에 의원면직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임용고사를 거쳐 경남에 2005.3.1.자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면, 별거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 별거기간에는 의원면직 기간 전 근무는 별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 임용고사 후 근무한 기간 동안의 별거 기간만 인정합니다.(2005.3.1.이후 별거기간만 인정함)

Q4. 전출 제한 조건에 수석교사는 전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석교사이면서 전출을 희망하고 싶을 때는 수석교사 면직 신청 후 면직 발령을 받고 전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2021학년도 시도간 교류로 충남에서 경남으로 전입하였고, 전입 후 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21년도 후반기에 저희 남편이 울산의 직장으로 발령이 나서 2026.3.1.자 다시 시도간 전출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시도간 전출 신청 조건에 초등교사는 본도 근속경력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육아휴직) 및 제7호의2(입양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경력 기간에 포함되는 조항에 의거 본도 근속경력에 포함되므로 시도간 전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남편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사택이 서울에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올해 사택을 경기도로 옮겨버렸습니다. 부부 별거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별거기간 인정 조건에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의 등재 기간 또는 직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재 사항이나 재직증명서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예) 결혼 후 서울 소재 직장, 사택에서 5년 근무 중 올해 사택을 경기도로 옮겼다면 서울의 별거기간은 재직증명서만으로도 5년간 별거가 증빙이 되고, 경기도 별거기간은 사택 이전 후 주민등록상의 기록만으로 증빙이 됩니다.